서 울 특 별 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50-8654 / 전송 773-4161

문서번호 하행 58175-305

시행일자 94. 2. 24.

(경유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고시공고 1994. 2. 25. 제1994-66호

취급		시 장
보존		
국 장	전결	
과 장		법무담당관
계 장		법제심사계장
기안	곽 창 현	협조

제목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건설부 하계 58175 - 1024(93.12.22)호와 관련입니다.

2. 건설부훈령 제847호(93.12.22)로 하천 점,사용료징수조례준칙이 개정 시달되어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,이를 미리 시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별첨안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가. 입법예고안 : 별첨

나. 입법예고기간 : 94. 3. 1 . - 94. 3. 20 .까지(20일간)

첨부 :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입법예고.1부. 끝

(제2안)

수신 공보1담당관

제목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시보게재의뢰

1.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시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공고안 : 별첨

첨부 :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부. 끝.

하 수 행 정 과 장

103 2-1 ~~105~~ 98

(제3안)

수 신 수신처참조

제 목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1. 건설부의 하천 점.사용료징수조례준칙 시달에 따라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니 유관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94.3.20.까지 하수행정과장 참조 제출하기 바라며 기일내 제출의견이 없으면 별도의견 없는것으로 처리할것임.

가. 의견조회 사항 : 별첨

첨부 :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1부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수신처 : 기획담당관,서관(1-5),서국(1-14),서본부(1-4),서구(1-22 건설관리과장)
한강관리사업소장(관리부장)

104 2-2 ~~110~~ 9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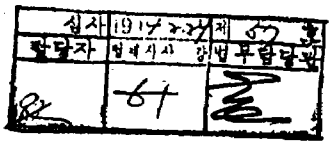

공 고 (안)

서울특별시공고 제1994-66호

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

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4년 2월 일

서 울 특 별 시 장

1. 개정취지

하천 점.사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지방세법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던 것을 국유재산법의 기준인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하는 등 하천 점.사용료등 징수에 대한 건설부의 조례준칙 시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점용료 산정기준 변경

- 토지가격을 현행 지방세법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적용.

나. 공업용수 인수에 따른 점용료부과기준 변경

- 현행 펌프관경을 기준으로 월정액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사용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를 적용.

다. 일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를 물가상승에 따라 인상

- 전기사업용수인수와 선박운항에 대한 점용료는 13-14년전인 1980년, 1981년에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나 그 동안의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2배로 인상하고,
- 앞으로 3년마다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하도록 함.

라. 점용료 과다증가에 대한 조정근거 마련

- 기준변경등으로 전년보다 10%이상 점용료가 증가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같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.

마. 점용료반환근거 조정

-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관리청이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(허가취소등)을 한 경우에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관리청의 잘못으로 허가량만큼 골재를 채취하지 못한 경우와 재해로 인한 점용료 감면시에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함.

바. 면적 및 기간에 대한 산정방법 개선

- 현행 면적 및 기간계산에 있어 반올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1㎡미만 면적 및 1월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않도록 함.
  다만, 총 점용면적이 1㎡미만,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점용행위를 규제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4. 3. .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A4용지 세워서 작성)를 서울특별시장(참조:하수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전화 750-8653-4)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 및 그 이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전화번호.